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경 위

- 발 의 자 : 이용균 의원
- 의안번호 : 제2161호
- 발의일자 : 2024년 10월 15일
- 회부일자 : 2024년 10월 18일

2. 제 안 이 유

- 도시공원 내 공원시설을 이용한 다양한 행사가 증가함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를 도시공원에서 개최하는 경우 일정 범위에서 상행위가 가능하도록 허용하여 공익적 행사의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려는 것임.

3. 주 요 내 용

- 가. 공원관리청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허용한 행사의 경우에는 도시공원의 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각 호의 범위에 따라 허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2항 신설)
-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상행위(안 제22조제2항제1호 신설)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문화·예술행사에 부대하여 이루어지는 상행위(안 제22조제2항제2호 신설)

라. 그 밖에 모든 시민에게 문화·예술·체험·여가 등의 기회제공 향상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행사의 상행위(안 제22조제2항제3호 신설)

4.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비대상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5. 검토 의견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공원 내에서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일정 범위에서 상행위가 가능하도록 허용하여 원활한 행사 개최를 지원하려는 것임.

나. 검토의견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49조제2항1)은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 내 금지행위로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와 ‘동반한 반려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 등을 하지 않고 공원에 입장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서울시는 조례로 도시공원(시공원 및 구공원) 내 상행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공익적인 행사의 경우에는 일정 부분 허용해줄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음.
- 또한, 지난 2018년 국토교통부는 ‘상행위의 종류와 형태는 매우 다양’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문화·예술행사에 수반되는 상행위는 도시공원 등의 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금지행위가 아니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행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폭넓은 재량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한 바 있음²⁾.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② 누구든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2. 동반한 반려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행위

- 따라서 도시공원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보호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 등에 이바지하기 위한 공간이며, 시민들의 공원 내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필요도 있는바, 본 조례안에서 정한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허용한 행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최·주관하거나 지원하는 행사’에 한하여 상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볼 여지가 있을 것임.

- 다만, 아직까지 법에서 상행위 허용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이는 엄격하게 제한된 특수한 경우로 이해할 필요가 있으므로 무분별한 상행위가 난립하거나, 불법 노상 행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공원관리청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임.

2) 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사례(2018.7.23.)

조례로 행사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가 금지되는 도시공원을 정하면서 일정한 범위의 상행위를 금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등 관련)